

증평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2007. 10. 5 규칙 제127호]

일부개정 2013. 12. 26 규칙 제236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5. 10. 2 규칙 제278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24. 12. 27 규칙 제45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26, 2019. 12. 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7>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평균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5조(홍보) 증평균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
해환경을 신고한 증평균 거주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
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26>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원, 사회복지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당해연도 동일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제7조(예산확보)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
상자의 선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26 규칙 제236호, 증평균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증평균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2015. 10. 2 규칙 제278호, 증평균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균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2. 27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3. 12. 26>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 위 반 행 위 | 지급액 |
|---|-------------------------|
| 1.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20만원 |
| 2.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3.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4.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5.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
| 6.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법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 10만원 |
| 7.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10만원 |
| 8.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10만원 |
| 9.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 10.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10만원 |
| 11.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 |
| 12.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가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 13.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5만원 |
| 14. 기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5만원 |

